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임태근 의원 외 6명 발의 (의안번호 70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태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안의 제정목적 (안 제1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8조)
- 조기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성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던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성북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 받도록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진선아 의원 외 6명 발의 (의안번호 71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진선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안의 제정목적 (안 제1호)
-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 규칙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임현주 의원 외 5명 발의 (의안번호 72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안의 제정목적(안 제1조)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칙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정기혁 의원 외 6명 발의 (의안번호 73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기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5조(특별휴가) 제10항
 -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결정 사항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결정 사항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경수현 의원 외 5명 발의 (의안번호 74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항

-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지방자치법 제40조1)」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2)에 의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결과, 성북구의회 월정수당은 1년차인 2023년은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4%로 인상한 월 2,786,100으로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1)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 2)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이호건 의원 외 9명 발의 (의안번호 75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 11.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호건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조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를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임.
-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이와 관련 서울시,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에서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두고 있어 이를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선하도록 권고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